

감사보고서

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(예원예술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0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

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(예원예술대학교)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(예원예술대학교)의 2026년 0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(다음 : 지적사항 있으면 나열 또는 별첨함)

2026년 05월 04일

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

감사 최창용

감사 강상욱

피감사자 (입회인)

직명 행정지원차장

성명 차종삼

[별지 제2호 서식]

학교법인예원예술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

· 지적사항(내용) 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 기관장의 시정조치계획
1. 법인 수익용재산에 대한 수익성 타당성 검토를 통해 수익용재산 유지 및 매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,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용재산에 대한 검토 필요	1. 법인 수익용재산에 대한 수익성 검토와 다양한 수익 창출 방안 모색
(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)	
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이사장 차 종 선 직인 (사인)	



